# 2023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   |
|-----|----------------|
| 윤길수 | 871124-1475919 |

#### 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| 의벼   | 보수월액(      | 보수월액(고지금액) |        | 소득월액(납부금액) | 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|
| 월별   | 건강보험료①     | 장기요양보험료②   | 건강보험료③ | 장기요양보험료④   |  |
| 01월  | 168,380    | 21,320     | 0      | 0          |  |
| 02월  | 150,230    | 19,240     | 0      | 0          |  |
| 03월  | 150,230    | 19,240     | 0      | 0          |  |
| 04월  | 233,640    | 29,680     | 0      | 0          |  |
| 05월  | 233,630    | 29,660     | 0      | 0          |  |
| 06월  | 233,630    | 29,660     | 0      | 0          |  |
| 07월  | 233,630    | 29,660     | 0      | 0          |  |
| 08월  | 233,630    | 29,660     | 0      | 0          |  |
| 09월  | 233,630    | 29,660     | 0      | 0          |  |
| 10월  | 233,630    | 29,660     | 0      | 0          |  |
| 11월  | 233,630    | 29,660     | 0      | 0          |  |
| 12월  | 98,190     | 12,010     | 0      | 0          |  |
| 연말정산 | 0          | 0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|
| 합계   | 2,436,080  | 309,110    | 0      | 0          |  |
| 총합계  | 총합계 2,745,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|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-1-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:기본내역 [고용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민등록번호         |  |
|-----|----------------|--|
| 윤길수 | 871124-1475919 |  |

## ■ 고용보험료 고지내역

(단위:원)

| 월별  | 고지금액    |
|-----|---------|
| 01월 | 36,040  |
| 02월 | 36,040  |
| 03월 | 36,040  |
| 04월 | 188,900 |
| 05월 | 47,120  |
| 06월 | 47,120  |
| 07월 | 47,120  |
| 08월 | 47,120  |
| 09월 | 47,120  |
| 10월 | 47,120  |
| 11월 | 47,120  |
| 12월 | 13,370  |
| 합계  | 640,230 |

- 1. 고지금액: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실제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급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2.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3. 건설업, 벌목업 사업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3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   |
|-----|----------------|
| 윤길수 | 871124-1475919 |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| 월별           |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|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01월          | 176,940    | 0            |
| 02월          | 176,940    | 0            |
| 03월          | 176,940    | 0            |
| 04월          | 176,940    | 0            |
| 05월          | 176,940    | 0            |
| 06월          | 176,940    | 0            |
| 07월          | 232,380    | 0            |
| 08월          | 232,380    | 0            |
| 09월          | 232,380    | 0            |
| 10월          | 232,380    | 0            |
| 11월          | 232,380    | 0            |
| 12월          | 243,720    | 0            |
|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| 0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추납보험         | 험료 납부금액    | 0            |
|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  |            | 0            |
| 합계           | 2,467,260  | 0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총합계        | 2,467,260    |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・추납보험료・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## ■ 계약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   |
|-----|----------------|
| 윤길수 | 871124-1475919 |

## 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|     | 상 호            |     | 보험종류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| 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|--|
| 종류  | 사업자번           | 호   | 증권번호              |       | 주피보험자             |     | 납입금액 계  |      |  |
|     | 종피보험자1(수익자)    |     | 종피보험자2(수익자)       |       | 종피보험자2(수익자)       |     | 종피보험자3( | 수익자) |  |
|     |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   |     | (무)베스트종신공제皿 1종 (전 |       | (무)베스트종신공제표 1종 (전 |     |         |      |  |
| 보장성 | 104-86-39723   |     | 4830170180        | 20041 | 871124-****       | 윤길수 | 978,010 |      |  |
|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|  |
|     | 삼성화재해상보험 ( 주 ) |     | 애니카다이렉트_개인용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|  |
| 보장성 | 202-81-45      | 617 | 123S2715390000    |       | 871124-****       | 윤길수 | 704,440 |      |  |
|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|  |
|     |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   |     | 참좋은운전자보험2210(CM)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|  |
| 보장성 | 201-81-45593   |     | 320223023         | 1018  | 871124-****       | 윤길수 | 125,040 |      |  |
|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|  |
|     |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   |     |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210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|  |
| 보장성 | 201-81-45      | 593 | 320222710825      |       | 871124-****       | 윤길수 | 127,320 |      |  |
|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|  |
|     | 인별합계금액         |     | 1,934,8           |       | 1,934,810 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|  |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3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 ■ 환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   |
|-----|----------------|
| 윤길수 | 871124-1475919 |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| 사 업 자 번 호    | 상 호      | 종 류 | 지출금액 계 |
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|
| 312-32-23829 | 삼성비뇨기과의원 | 일반  | 39,900 |
| 802-07-01248 | 백세약국     | 일반  | 3,700  |
|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  |          |     | 43,600 |
|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|          |     | 0      |
|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|          |     | 0      |
| 인별합계금액       |          |     | 43,600 |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5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   |
|-----|----------------|
| 윤길수 | 871124-1475919 |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| 구분       | 일반         | 전통시장분 | 대중교통이용분 | 도서공연비이용분 | 합계금액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2023년 합계 | 14,420,571 | 0     | 10,250  | 0        | 14,430,821 |
| 1월~3월    | 1,351,010  | 0     | 1,350   | 0        | 1,352,360  |
| 4월~12월   | 13,069,561 | 0     | 8,900   | 0        | 13,078,461 |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| 구분   | 사 업 자 번 호    | 상 호          | 종류    | 공제대상금액합계  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신용카드 | 213-86-15419 | 현대카드주식회사     | 일반    | 14,418,171 |
| 신용카드 | 213-86-15419 | 현대카드주식회사     | 전통시장  | 0          |
| 신용카드 | 213-86-15419 | 현대카드주식회사     | 대중교통  | 400        |
| 신용카드 | 213-86-15419 | 현대카드주식회사     | 도서공연등 | 0          |
| 신용카드 | 101-86-61717 | (주) KB국민카드   | 일반    | 2,400      |
| 신용카드 | 101-86-61717 | ( 주 ) KB국민카드 | 대중교통  | 9,850      |
| 인별합  | 계금액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14,430,821 |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시 사용내역과 가수하자로가 다른 경우 시용카드 사업자 들에게 '사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   |
|-----|----------------|
| 윤길수 | 871124-1475919 |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| 구분       | 일반        | 전통시장   | 대중교통   | 도서공연등 | 합계금액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2023년 합계 | 6,870,187 | 24,500 | 71,600 | 0     | 6,966,287 |
| 1월~3월    | 1,668,637 | 17,500 | 11,200 | 0     | 1,697,337 |
| 4월~12월   | 5,201,550 | 7,000  | 60,400 | 0     | 5,268,950 |

#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| 구분     | 사 업 자 번 호    | 상 호        | 종 류  | 공제대상금액합계 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
| 직불카드 등 | 114-82-08554 |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| 일반   | 4,127,949 |
| 직불카드 등 | 114-82-08554 |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| 전통시장 | 17,500    |
| 직불카드 등 | 527-88-00686 |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| 일반   | 70,800    |
| 직불카드 등 | 109-81-53365 | 코나아이 ( 주)  | 일반   | 1,911,100 |
| 직불카드 등 | 109-81-53365 | 코나아이 ( 주)  | 전통시장 | 7,000     |
| 직불카드 등 | 462-86-01671 | 토스뱅크 주식회사  | 일반   | 490,258   |
| 직불카드 등 | 462-86-01671 | 토스뱅크 주식회사  | 대중교통 | 5,400     |
| 직불카드 등 | 101-86-61717 | (주) KB국민카드 | 일반   | 270,080   |
| 직불카드 등 | 101-86-61717 | (주) KB국민카드 | 전통시장 | 0         |
| 직불카드 등 | 101-86-61717 | (주) KB국민카드 | 대중교통 | 66,200    |
| 직불카드 등 | 201-81-68693 | (주)국민은행    | 일반   | 0         |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   |
|-----|----------------|
| 윤길수 | 871124-1475919 |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| 구분 | 사 업 자 번 호 | 상 호 | 종 류 | 공제대상금액합계  |
|----|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|
| 인  | 별합계금액     |     |     | 6,966,287 |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
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3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   |
|-----|----------------|
| 윤길수 | 871124-1475919 |

## 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| 구분       | 일반        | 전통시장분 | 대중교통이용분 | 도서공연비이용분 | 주택임차료 거래 | 합계금액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2023년 합계 | 4,190,757 | 0     | 0       | 20,000   | 0        | 4,210,757 |
| 1월~3월    | 605,610   | 0     | 0       | 20,000   | 0        | 625,610   |
| 4월~12월   | 3,585,147 | 0     | 0       | 0        | 0        | 3,585,147 |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-9-
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>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/발급거부 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- 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3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   |
|-----|----------------|
| 윤길수 | 871124-1475919 |

#### 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

(단위:원)

|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월별 공제대상금액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78 59            | 조 근   | 01월     | 02월       | 03월     | 04월     | 고레디사그애    |
| <del></del>      | 구분 종류 | 05월     | 06월       | 07월     | 08월     | 공제대상금액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| 09월     | 10월       | 11월     | 12월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| 205,145 | 179,200   | 221,265 | 874,247 |           |
| 현금영수증            | 일반거래  | 213,820 | 465,849   | 214,536 | 573,838 | 4,190,757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| 396,186 | 382,484   | 320,405 | 143,782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| 20,000  | 0         | 0       | 0       |           |
| 현금영수증 도서.공연비등거 래 | 0     | 0       | 0         | 0       | 20,000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| 0       | 0         | 0       | 0       |           |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-10-
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>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/발급거부 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- 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## ■ 차입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   |
|-----|----------------|
| 윤길수 | 871124-1475919 |

#### 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

(단위:원)

| 취급기관<br>(사업자번호)            | 대출종류<br>(상품명)        | 최초차입일<br>최종상환<br>예정일     | 상환<br>기간      | 주택<br>취득일    | 저당권<br>설정일 | 연간합계액   | 소득공제<br>대상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
| (사업사민호) (상품명)              | 차입금                  | 고정금리<br>차입금              | 비거치식<br>상환차입금 | 당해년<br>원금상환액 |            | 내경픽     |             |
| 한국주택금융공사<br>(104-81-86269) | 기존주택구입<br>(아낌e보금자리론) | 2023-11-15<br>2033-11-15 | 10년           | 2023-09-25   | 2023-11-15 | 292,191 | 292,191     |
| (104-01-00203)             | (어짐(오금사디온)           | 90,000,000               | 90,000,000    | 90,000,000   | 616,878    | ŕ       | ,           |

- 1. 공제 대상: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)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(2013.12.31. 이전은 3억원 이하, 2014.1.1.~2018.12.31. 4억원)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※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,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
- 2. 공제한도 :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,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,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300만원, 500만원, 600만원, 1000만원, 1500만원, 1800만원 한도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